

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343
----------	------

2023년 12월 21일  
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0. 16. 김영철 의원 대표발의(곽향기 의원  
등 19명 찬성)

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23.

다. 상정일자 : 제32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

- 2023년 12월 21일 상정·의결(수정 가결)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예산·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나,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직접적이고, 명확하게 표현·반영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.
- 또한, 위원회의 활동에 현장 방문 등을 추가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, 예산

재정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조 제목을 '자료제출 등'으로 변경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“예산정책연구위원회”를 “예산정책위원회”로 변경함(제명, 안 제1조 및 안 제2조, 안 부칙 제2조)
-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방문 기능을 추가하고, 자료제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 제목을 ‘자료제출 등’으로 변경함(안 제9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사항

#### 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10.26.~2023.10.30.

나) 예고결과 : 없음

#### 2) 소관부서 의견조회 : 원안가결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병수)

###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개정안은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을 직접적이고,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위원회의 명칭을 “예산정책위원회”로 변경하고,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방문 활동 등을 추가하고자 발의되었음.

### 2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개요

-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)의 예·결산 및 지방재정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제정·시행(2019.1.)으로 2019년부터 의회의 자문기구로 운영중임.
-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연 2회의 정기회와 수시 임시회로 운영되고, 예산정책연구 관련 세미나와 분야별 연구주제 발표회를 개최하며, 연 1회 예산정책 연구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음<sup>1)</sup>.
- 다만,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5년여 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의 싱크탱크(Think tank)로서의 실질적인 정책대안 발굴과 제시보다는 형식적인 정책 연구활동에 머물러 있고, 정책위원회와의 기능 또한 일부 중복되고 있으므로 두 위원회 간 기능과 역할 등을 명확히 조정

1) 제1기부터 제4기(2019~2023)까지 총 24회의 전체회의와 54건의 연구발표, 4회의 연구 사례집을 발간하였으나 집행기관의 예산정책 등에 대한 반영여부 등의 실적관리는 없는 상황임.

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.

**<예산정책연구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기능 비교>**

구분	예산정책연구위원회	정책위원회
기능	1. 의원들이 요청하는 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·결산·기금운용계획안의 분석에 관한 사항 2. 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·평가에 관한 사항 3. <u>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</u> 4.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·분석에 관한 사항 5. 지방재정 관련 법·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	1.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·조사·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. 삭제 <2020.3.26> 3. 삭제 <2020.3.26> 4. 삭제 <2020.3.26> 5. <u>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에 관한 사항</u> 6. 「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」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 등

**3 위원회의 명칭 변경(제명, 안 제1조, 안 제2조, 다른 조례의 개정)**

- 개정안은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을 직접적이고, 명확하게 표현·반영하기 위해 각각의 개별 조례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‘예산정책연구위원회’에서 ‘예산정책위원회’로 변경 제안하고 있음(제명, 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부칙 제2조).



- 다만, 개정안과 같이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 등을 강화하지 않고 명칭만 변경한다고 해서 예산정책 업무기능이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움.
  -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▶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예산안·결산·기금운용 계획안 분석, ▶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·평가, ▶시정 및 교육 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 정책대안 제시, ▶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·분석, ▶지방재정 관련 법·제도 개선 등의 기능을 수행 토록 규정하고 있음(제2조).
- 또한, 조례 제정 당시 제안된 위원회 명칭이 예산정책위원회였으나,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의회에서 명칭을 '예산정책연구위원회'로 수정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<sup>2)</sup>.
- 한편,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비슷한 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 중인 다른 시·도의회는 모두 4 곳이며, 명칭은 예산정책위원회 또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임(붙임자료1).

#### 4 위원회의 현장방문 및 자료제출

- 안 제9조는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방문 기능을 추가하고, 관계공무원 등의 자료제출 협조 요청을 강화하고자 현행 조 제목 '의견청취 등'을 '자료제출 등'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2)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(의안번호 157, 2018.12.20).

**<신·구조문 대비표>**

현 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 안
제9조(의견청취 등) ① (생   략) ② <u>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,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</u>	제9조(자료제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, 전문기관 또는 단체,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</u>

- 개정안과 같이 시정 전반의 예산정책을 분석하는 자문기구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현안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예산정책에 반영하면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 주는 입법·정책적 효과가 기대됨.
- 또한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,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, 실제 현장에서는 관계자 등의 인지 부족으로 자료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, 조 제목을 '자료제출 등'으로 변경해 자료 제출 협조에 대한 편의를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임.
- 다만, '자료제출'이 조 제목으로 특정되면 지방자치법령<sup>3)</sup>상 자료제출 요구의

---

3) 「지방자치법」 제48조(서류제출 요구)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 
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  
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 
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,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·자기디스크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.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0조(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) ①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

주체가 아닌 민간인이 포함된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법령의 근거 없이 직접 관계공무원에게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.

- 한편,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따르면, 연간 2회의 현장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평균 2백만원으로 추계됨<sup>4)</sup>.

## 5 종합 의견

- 개정안은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을 직접적이고,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위원회의 명칭을 “예산정책위원회”로 변경하고,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방문 활동 등을 추가하고자 발의된 것임.
- 이는 위원회의 기능을 단순연구에 멈추지 않고 예산정책 기능 강화를 통해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관련 정책 반영률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.
- 다만, 개정안과 같이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명칭만 변경한다고 예산정책 업무기능이 활성화·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개선과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.

---

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.

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4) 위원회 위원수(25명) × 중식단가(4만원) × 연간운영횟수(2회) = 2백만원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수정 가결

(재적의원 12명, 출석위원 10명, 찬성 10명)

8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343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12월 21일  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‘자료제출’이 조 제목으로 특정되면 「지방자치법」상 자료제출 요구의 주체가 아닌 민간인이 포함된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법령의 근거 없이 직접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현행 ‘의견청취 등’으로 조 제목을 변경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조 제목 “자료제출 등”을 “의견청취 등”(안 제9조)으로 수정함.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조치 : 원안과 같음.
- 기타사항 :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

#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 
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의 제목 “(자료제출 등)”을 “(의견청취 등)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(의견청취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,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9조(자료제출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, 전문기관 또는 단체,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9조(의견청취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예산정책연구위원회”를 “예산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예산정책연구위원회”를 “예산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, 전문기관 또는 단체,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20조의2 제목  
“(예산정책연구위원회)”를 “(예산정책위원회)”로 하고, 제1항 및 제2항  
중 “예산정책연구위원회”를 “예산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<u>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회의원의 예산·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<u>예산정책연구위원회</u>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의회 <u>예산정책연구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제9조(의견청취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,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예산정책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기능) ----- <u>예산정책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의견청취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, 전문기관 또는 단체,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